

農政學上으로 본 茶山先生(下)

李勳求

先生은 田政에 있어서 量田法에 置重하였스니 境界가 분명치 아니하면 農事改良의 根本이 서지 않는 것을 看破함에 잇섯고 더욱히 痛快한 것은 孝宗朝 制定의 『量田私目』으로 當時에 金科玉條로 使用하던 바의 方用直田句田 梯田 等 法을 『仍是死法, 不可通用於他用』이라고 喝破한 點에 있다. 또 先生은 山作 問題에도 當時 普通사람의 想像치 못하는 바를 看破하였스니 古『論以天地公理, 農夫耕此王土, 九一之稅, 納于王倉, 食其餘八, 無復侵者, …… 游閒之士 廣置田地 使民耕作 收其什五 竝與王稅而責於佃客 可乎』아라고 한 만큼은 맞치 今日 土地國有論者들의 主張하는 것을 먼저 본 것과 같다.

餘白이 업슴으로 先生의 民本主義的 農業政策을 縷縷히 記述할 수가 업거니와 先生은 稅納 倉庫, 還米, 火田民, 災免, 賦役 戶籍, 轉運 等 各項事宜에 이르기 까지 至精, 至密한 研究를 遂하야 時弊를 一一 指摘하고 그것의 是正을 爲하야 卓見을 披瀝하였다.

先生의 勸農政策은 田農, 園廬, 圃畦, 嬪功, 虞衡, 畜牧의 六科를 分設하고 各科를 九考에 分하여 農作의 成績을 考查하고 最優 等者의게는 官職을 授與하야 褒賞하는 方法을 講究함으로써 人才選拔의 方途를 삼자고 한 대에 最絶頂인 奇想이 뵈인다. 이와가튼 勸農 兼 人才選拔論은 實로 先生의 拔群한 卓見인데 그 所論의 一端을 引用하여보자. 『夫 所謂 科詩者, 何物, 項羽沛公之句, 風塵宇宙之詠, 狂言妄說, 設科取人, 以登仕籍, 是所謂命德之器乎, 后稷夏禹, 盡力於溝洫, 不害其薦爲王侯, 秦非子以養馬, 列爲諸侯…今茲六科之人苟有秉心塞淵, 能盡其職者, 雖以之薦爲公相, 猶爲古法……』果然 先生의 當時에 所謂 討賦 論策으로써 榮職에 노든 者들이 項羽沛公, 風塵宇宙 等 狂言妄說을 안이한 사람이 몇몇이나 되엿을가? 先生의 所論을 읽을 때에 그 金科玉條의 明言이 安임이 업는 것을 首肯치 안이할 수가 업는 것이다.

餘白이 업는 關係 上 以上으로써 農政學者로서의 茶山의 先生을 보고저 한다. 勿論 論者가 先生이 農政學說로서 한 體系를 完成치 못하였다고 할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것은 先生을 一斑만 보는 管見에서 나오난 말이다. 先生을 全體로 보고 그 農政方面에 關한 것을 보아야 할 것이다. 淸으로 한 말슴 蛇足を 加할 것은 淸 淺見薄識의 橫說豎說한 것이 或 先生의 尊貴를 汚瀆할가 저어하는 것이다. 先生의 百年祭가 果然 우리 學界 또는 우리가 우리를 찾는 대에 큰 意義가 잇기를 바라고 擲筆한다. (完)